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지원〉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80호)

2024. 8 .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 · 김준형 · 김선민 · 차규근 · 이해민 · 김재원
조 국 · 박은정 · 황운하 · 신장식 · 강경숙 · 천하람
정춘생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 의안번호 : 238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34조 및 제6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5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제34조(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① 원내정당(국회에 1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원의----- -----원내정당에----- ----.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명한다.	② -----원내정당-----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청문회) ① ~ ④ (생략)	제65조(청문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 ----- -----원내정당의-----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제34조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는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으로¹⁾, 국회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 및 교섭단체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²⁾.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는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³⁾, 「국회법」 제65조제5항은 정책연구위원을 청문회 사전조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⁴⁾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 시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⁵⁾에 따르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명으로, 1급 내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교섭단체의 수에 따른 배정기준에 따라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직무) ①정책연구위원회는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2)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 p.167

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직무)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보조자)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5)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각 교섭단체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교섭단체⁶⁾”에 대하여 두고 있는 정책연구위원을 “원내정당”에 두도록 확대함으로써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⁷⁾ 소속 의원에 대하여도 정책 및 입법활동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보좌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소속의원 수에 대한 기준 없이 모든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경우, 소속의원 수가 1명인 원내정당에는 정책연구위원이 배정되는 반면, 무소속인 의원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위원이 배정되지 아니하여 정당 소속 여부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배정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6)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7) 참고로 제22대국회 정당별 국회의원의 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국회의장 우원식)임. (2024. 8. 9. 기준, 국회홈페이지 의원현황 정보)